

본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을 전제로 한 정보습득 등의 용도 외 무단 복제, 제 3자에 대한 유출 및 공개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주)치어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8020000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8년 07월 29일] [www.cheerskorea.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년 03월 19일]

[치어스]

정 보 공 개 서

[(주)치어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치어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5, 상가동 3층 306-1호]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 031-719-6250]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 031-719-6255]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창업지원팀 080-445-8888]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인사말	1
2.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2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5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등	9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0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6
7.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1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3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5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36

※ 별첨서류

[별첨1]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별첨2]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품목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별첨3] 가맹금예치신청서

[별첨4] 정보공개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1.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주)치어스 대표자 정 한입니다.

호텔 급 요리메뉴와 생맥주를 함께 즐기는 프리미엄 레스토랑 치어스는 지난 2001년 경기도 분당에 본점 오픈 이후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객감동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No.1 프리미엄 레스토랑 치어스입니다.

치어스는 유행을 쫓아 단기간에 성장했다 사라지는 기획형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검증된 브랜드입니다. 지방 주요 도시에 가맹점을 출점시켰으며 경기도 용인에 자체물류 배송시스템을 갖춘 중앙 물류센터를 운용하다 2016년12월 20일부터는 위탁물류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즐거움이 가득한 외식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치어스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음주문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칙칙한 분위기의 호프집을 탈피해 밝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통해 마음까지 포근해지는 즐거움이 가득한 외식공간을 구현합니다.

전문 요리사가 주방에서 즉석으로 만들어 내는 60여 가지의 다양한 후레쉬 푸드는 맛은 물론 고객님들의 건강까지 고려했습니다.

맛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치어스는 신선한 식자재와 정기적인 메뉴 개발, 요리사 전문 교육을 통해 앞으로도 맛있는 요리가 함께 하는 생맥주전문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방인력부터 매장관리까지 선진화된 시스템

치어스는 가맹점 관리의 모든 공정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외식 창업자에게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주방인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치어스는 자체 조리아카데미를 통해 고급 주방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주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주방장 구인부터 교육, 관리까지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4단계 매장관리시스템, 위탁 물류배송시스템 등 수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차별화되고 선진화된 본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 사장님들께 매장운영 편의성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간의 동반성장을 지향합니다.

치어스 본사와 가맹점은 한배를 탄 가족입니다. 본사의 이익에 앞서 가맹점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본사와 가맹점의 동반성장은 치어스가 추구하는 최고의 경영이념입니다. 수백 개 가맹점을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기 보다는 한 개의 가맹점이라도 실패하지 않는 매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17년이 치어스의 초석을 쌓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7년은 치어스 가족 모두가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치어스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치어스와의 인연은 곧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치어스 대표자 정 한 올림

2.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치어스	치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5, 상가동 3층 306-1호 (야탑동, 동양프라자)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3.10.06	2003.10.13	정한	031-719-6250	031-719-6255
	법인등록번호	131111-0103504	사업자등록번호	129-81-66087	

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주)치어스/ 정 한	치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5, 상가동 3층 306-1호 (야탑동, 동양프라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한	031-719-6250	031-719-6255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아펙스 에프앤비/ 정 한	아펙스(APEX)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5, 상가동 3층 306-1호 (야탑동, 동양프라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한	031-719-6250	031-719-6255
			법인등록번호	131111-0388114	사업자등록번호

다.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 및 국내에서 영업 중인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국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 해당 사항 없습니다.

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경우 해당 기업의 명칭,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이름

☞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 귀하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칭	치어스	-
상호	치어스 OO점	-
상표(서비스표)		[4쪽] 차목 참조
광고	해당없음	-
그 밖의 영업표지		-

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그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671,566	2,223,743	447,823	681,577	-198,225	-196,071
2022년	2,847,741	2,240,137	607,603	914,283	25,087	159,779
2023년	2,906,598	2,264,142	642,455	923,551	40,702	34,852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사. 가맹본부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관련여부	성명	직위	개인별 경력	
			기간	경력내용
가맹사업 관련임원	정 한	이사	2003년 ~ 현재	(주)치어스 이사

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4

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정 한/ (주)아펙스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예정	아펙스(APEX)(등록번호:20190987) 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여부(일자) 등록여부(일자)	출원번호 등록번호	등록권리자	등록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치어스 CHEERS	상표 (제43류)	출원(2004.06.01) 등록(2005.09.30)	출원_4120040012108 등록_4101217830000	정한	2025.09.30 (2025.09.30)
	상표 (제43류)	출원(2006.12.07) 등록(2007.11.05)	출원_4120060030347 등록_4101561480000	정한	2027.11.5 (2027.11.5)
	상표 (제43류)	출원(2008.02.28) 등록(2008.10.20)	출원_4120080005132 등록_4101759140000	정한	2028.10.20 (2028.10.20)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적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2002년 11월 15일

나. [치어스]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치어스	치어스	정한	2002.11.15 ~2003.10.0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3-3 동양프라자 1층
(주)치어스	치어스	정한	2003.10.06~2016.11.0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58, 2층(역삼동, 백림빌딩)
(주)치어스	치어스	정한	2016.11.04~2021.07.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6번길 11 5층(정자동, 세명타워)
(주)치어스	치어스	정한	2021.07.06~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5, 상가동 3층 306-1호 (야탑동, 동양프라자)

다. [치어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치어스]	주류	프리미엄 레스 PUB

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1	80	1	74	73	1	65	64	1
서울	16	16		14	14		14	14	
부산									
대구	1	1		1	1				
인천	3	3		2	2		2	2	
광주									
대전	1	1		1	1		1	1	
울산	1	1		1	1		1	1	
세종									
경기	53	52	1	49	48	1	42	41	1
강원									
충북	1	1		1	1				

충남	2	2		2	2		2	2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	2		2	2		2	2	
제주	1	1		1	1		1	1	

마.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96	-	-	16	-	80
2022년	80	1	-	8	2	73
2023년	73	-	-	9	5	64

바.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계열회사	(주)아펙스 스에프앤비	아펙스 (APEX)	20190987	주점	0/0	0/0	0/0

사.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직영점제외)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치어스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64	235,547	6,316	687,671	19,957	10,481	435	62개점 대상
서울	14	298,945	8,596	685,274	15,079	139,800	3,837	13개점 대상
부산								
대구								
인천	2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대전	1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경기	41	228,405	6,324	687,671	19,957	10,481	435	40개점 대상
강원								
충북								
충남	2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1	해당없음						5곳 미만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과 휴업 중인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 위 표의 매출액은 다음의 산출식을 따른 것입니다.

$$1\text{점포 연간매출 추정액} = \text{각 점포의 포스 매출액 합계액} \div \text{영업개월수} \times 12\text{개월}$$

아. 치어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64개	3,202일

자.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


☞ 해당 사항 없습니다.

차.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023년도 기준 / 단위, 천원)

구 분	수단별 항목	비 용
광고비		3,337

- ▶ 당사가 2023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치어스와 관련하여 사용한 광고 및 판촉비는 이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예치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와 소재지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우체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	031-714 - 9004

-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작성 후 가맹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가맹사업자는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인근 우체국에 가맹금과 함께 제출
 - 우체국에서는 제출된 가맹금 예치신청서 확인.접수 후 가맹금을 가맹본부와 계약 우체국이 개설한 가맹금 예치 모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
 - 가맹사업자는 우체국으로부터 가맹금 예치증서(원본)를 교부받아 보관
 - 계약 우체국에서는 가맹사업자의 가맹금 예치 후 가맹금 예치증서(부분)를 첨부하여 가맹본부에 가맹 사업자의 가맹금 예치사실(예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 ▶ 귀하는 또한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타.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치어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임대비용, 소방공사 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①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원/VAT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1,000,000	계약체결시	영업 개시 전 해지	OPEN전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OPEN후 : 반환하지 않음.
교육비	3,300,000	계약체결시	교육 개시 전 해지	교육이수 후에는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오픈행사 및 판촉/홍보물	2,200,000	계약체결시	비용 지출 전	판촉/홍보 등에 비용이 지출된 경우, 반환하지 않음

* 위 표의 오픈행사 및 판촉/홍보물의 비용은 귀하의 점포크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3,000,000 (VAT없음)	계약 체결일	- 가맹금, 로열티, 물품대금 미지급 - 계약 종료 후 조치 (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상품 등의 대금(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3배 이내

2)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금일천구백오십만원(₩19,500,000)(VAT포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VAT포함)

구분	금액
합계	19,500,000
가맹비	11,000,000
교육비	3,300,000
오픈행사 및 판촉/홍보물	2,200,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 (VAT없음)

3)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원/VAT포함/99㎡(30평) 기준)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100,260,000		-		-
인테리어	협력업체	60,000,000 (3.3m ² 당 200만원)	2,000,000	- 계약금(40%) : 인테리어 공사계 약 체결시 - 중도금(30%) : 착공일로부터 10 일 이내 - 잔금(30%) : 오픈하기 전 7일 이내	공사 전 계약취소	직접시공시 인테리어 설비 총액의 20% 감리비 부담
소방공사	협력업체	3,300,000	110,000		공사 전 계약취소	상한 : 4,400,000 하한 : 2,200,000
가구공사	가맹본부	9,900,000	330,000		공사 전 계약취소	테이블 수에 따라 다름
POS기 설치	가맹본부	협의			설치 전 계약취소	본체 1대 프린트기 1대
간판	가맹본부	변동			설치 전 계약취소	간판은 규격에 따라 상이함
주방그릇 및 집기	협력업체	17,160,000	572,000	입고 당일	입고 전 계약취소	-
초도상품	협력업체	5,500,000		입고 당일	입고 전 계약취소	주방재료 일체
주류사입	협력업체	4,400,000		입고 당일	입고 전 계약취소	주류 일체

* 소방공사는 2층 해당 매장에 한하여 공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위 표에 따른 업체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사가 귀하에게 별도로 부담시키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위 표에 따른 감리비(인테리어 설비 총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입지선정에 있어 가맹본부에 의뢰할 시 별도의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가 점포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고졸 이상의 학력	피성년 후견인이 아닐것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음
종업원	제한 없음	만19세 이상	

6)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치어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영업 중의 부담

1)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원, VAT별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지급대상자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로열티	가맹본부	3.3㎡(한평) 당 15,000	매월 25일	없음	후불제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광고료	가맹본부	실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광고 실시 전	전국광고를 시행할 경우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광고 시행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1,100,000	교육 실시 전	교육개시 전	교육 개시 후에는 반환 불가
관리시스템 (POS)	가맹본부	30,000	매월 초	정산 후 반환	매 해당월 지정된 날짜에 자동이체 정산 처리 사용일수만큼 가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정보공개 서 8-가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변경 전	간판을 변경한 후에는 반환 불가
인테리어, 시설 교체·보수 비용	협력업체	정보공개 서 8-가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전	교체·보수한 후에는 반환 불가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는 2023년도에 당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영업 중 필요한 품목을 공급받았으므로 차액가맹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회계처리 재고관리	상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에 관하여 감독	가맹본부의 요청시	문의 (031-719-6250)

다.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서는 재가맹비를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재가맹비는 재계약 당시의 신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VAT별도)으로 합니다. 단, 가맹본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VAT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재가맹비	2,640,000 (변동가능)	재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반환불가	재계약시 소멸되는 비용	최초계약기간 만료 후 1회에 한하여 면제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적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권을 이전받는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신규 가맹계약시	잔존 가맹계약시	비고
가맹비	50%	면제	- 신규 가맹계약시 계약기간 1년 보장 - 잔존 가맹계약시 양도인의 잔존계약기간 보장(양수도 당시의 최초가맹금을 기준으로 함)
계약이행 보증금	100%	100%	
교육비	100%	100%	

※ 가맹점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철거의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 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주가 부담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기타 가맹본부의 상호 및 상표, 가맹본부의 사양에 의하여 설계된 시설 인테리어 및 구조물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치어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별첨 참조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치어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나.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치어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당사가 치어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계						2023년 기준

다.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3) 판매가격의 결정_메뉴별 권장가격 참조	당사에서 지정한 메뉴를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 가능합니다.	상품공급 중단 또는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제한내용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 제한내용 :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위반시 책임 :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판매가격의 결정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조언 내지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표준가격>은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권장(조언)가이며, 가맹점이 판매촉진 등의 필요로 <표준가격>과 다르게 판매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빠짐없이 가맹본부에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 후에 가격을 결정합니다.

메뉴별 권장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카테고리	메뉴명	가격
1	피자/ 치즈요리	베이컨 할라피노 피자	16,000
2		고르곤졸라 피자	16,000
3		치어스 슬림피자	16,000
4		치킨나초	16,000
5		치즈불닭	16,000
6		치킨 퀘사디아	18,000
7	구이안주	일품닭꼬치	16,000
8		모듬포	18,000
9		반건오징어	16,000

10		한치	16,000
11		노가리	15,000
12		먹태	15,000
13	튀김요리	찹쌀김부각	11,000
14		황태겹질튀각	11,000
15		찹쌀탕수육	17,000
16		새우탕수	17,000
17		오다리&나초칩	14,000
18		닭겹질튀김&나초칩	14,000
19		통마늘모래집튀김	16,000
20		포테이토콤보	15,000
21		치즈스틱감자튀김	17,000
22		모듬튀김	20,000
23	치킨요리	순살갈릭치킨	17,000
24		순살고추치킨	17,000
25		순살파닭	17,000
26		후라이드치킨	20,000
27		치어스양념치킨	21,000
28		치어스갈릭치킨	21,000
29		버팔로윙치즈포테이토	17,000
30		윙봉치킨&병이	24,000
31		치킨떡볶이	16,000
32	샐러드/ 과일	판자넬라샐러드	15,000
33		콕샐러드	16,000
34		케이준치킨샐러드	16,000
35		과일샐러드	17,000
36		핫스파이스샐러드	16,000
37		훈제연어고구마샐러드	18,000
38		계절과일	30,000
39		황도	13,000
40	화채	20,000	
41	스페셜 요리	간풍기	17,000
42		골뱅이소면	18,000
43		단호박뱅이	19,000

44		훈제삼겹두부김치	19,000
45		을지로골뱅이	21,000
46		쭈꾸미볶음	18,000
47		훈제족발	29,000
48		고추잡채	18,000
49		모듬소시지	18,000
50		갈릭소시지	16,000
51		비프&쉬림프	17,000
52		치킨&쉬림프	17,000
53		통삼겹&하와이안함박	19,000
54		훈제오리밀쌈	19,000
55		스페셜치킨플래터	23,000
56	볶음요리	마늘야채모래집볶음	17,000
57		우삼겹숙주볶음	17,000
58		매운닭발	17,000
59		순대볶음	17,000
60		매운순살떡태구이	17,000
61		해물떡볶이	18,000
62		해산물우동볶음	18,000
63		탕요리	모듬조개탕
64	우짬탕		18,000
65	새우완탕		17,000
66	나가사끼탕		18,000
67	탱탱알탕		18,000
68	사천해물탕		18,000
69	간사이명품오뎅탕		19,000
70	해물누룽지탕		19,000



라.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

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일반인에게 안주와 호프를 판매하는 업종 (프리미엄 레스 PUB 업종)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을 구분 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하며, 영업지역은 가맹점에서의 도보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500M로 합니다. (특수상권의 경우 별도적용 가능)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관한 법률 제 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가맹점사업자 동의→영업지역 변경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으로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 영업지역을 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치어스]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치어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가맹본사와 가맹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특약사항으로 지정합니다.

마.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5.6	4.4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바.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계약(최초계약기간, 갱신 및 재계약기간) 기간 : 1년

2) 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 제6조 제2항).

-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④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점포의 점유권을 갱신 기간 중에 계속 보유를 하지 못할 경우
- 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후 관계 당국의 권고나 영업방침의 변경에 따라 본계약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그 수정된 가맹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 ⑥ 가맹점사업자가 갱신 당시 통용되는 가맹본부의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 기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⑦ 가맹점사업자가 갱신 당시 재가맹비를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 ⑧ 갱신 당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인테리어 및 비품이 『치어스』 가맹점의 통일성 및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3) 계약 연장이거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계약서 제6조 제2항)

-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양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계속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재계약을 하고 [11]쪽에 따른 재가맹비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기간 만료 후 1회에 한하여 [14]쪽에 따른 재가맹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 가맹본사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연장이나 재계약의 의사여부를 서면 또는 유선을 통하여 가맹점에 확인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2)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4) 계약 종료 및 해지 사유 및 그 절차(계약서 제35조 각항)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2회 이상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의 변경 사항(명의변경, 점포 규모 및 소재지 변경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의 채무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경쟁되는 동종업종을 영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공급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류대리점을 교체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2일 이상 점포운업을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갑"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매뉴얼 미준수로 가맹본부가 소비자로부터 년 2회 이상의 항의를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정관청이나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같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계약서 제43조 제2항)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제정·개정 등에 따른 경우 : 사전 통보 및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 서면합의로 결정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완료	-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사.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귀하가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15일 전에 가맹본부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② 가맹본부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단,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본부가 전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신규 가맹계약체결 : 계약기간 1년 보장, 가맹비 50%,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100%(양수도 당시의 가맹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기준)를 가맹본부에게 지급
 2. 잔존 가맹계약체결 : 귀하의 잔존계약기간 보장,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100% (양수도 당시의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기준)를 가맹본부에게 지급
 - ④ 전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본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⑤ 귀하의 권리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⑥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 · 의무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음	
대리경영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원칙으로는 대행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없으나,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하에만 대행 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3)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치어스]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일반인에게 안주와 호프를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4)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의 제한 내용 :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수의 제한 내용 : 가맹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개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영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되는 종업원 수 :
 - 30평 ~ 40평 : 주방 조리 1명, 종업원 수 3명(점주님 근무시)

■ 40평 ~ 60평 : 주방 조리 2명, 종업수 수 5명(점주님 근무시)

- 영업장 근무 강제 () / 영업장 근무 자율 (○)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감독항목	감독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친절도/서비스	매장방문-친절도 및 서비스마인드 체크리스트 활용 작성-가맹사업자 확인.서명-완료	1~3회 /매월	점포관리팀	
매장 청결상태	매장방문-청결도 확인-체크리스트표 점검-완료	상동	점포관리팀	
조리 및 주방위생 상태	매장방문-레시피 준수확인-주방위생 점검(보건증확인 등)-가맹사업자.주방부장 통보.확인	1회이상 수시/매월	조리관리팀 점포관리팀	
품질관리	매장방문-품질확인-관리표 작성-가맹사업자 확인,서명	상동	품질관리팀 점포관리팀	
상품보관 및 규정상품 취급 여부	매장방문-식품 보관상태 및 규정상품 취급확인-현장점검결과 체크.계도-상호확인	상동	품질관리팀 점포관리팀	

상기 항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아.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치어스]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광고	브랜드광고	50%	50%	광고 세부계획 → 귀하에게 통지 → 분기를 기준으로 광고비 부담내역을 귀하에게 해당 분기의 전달 말일까지 통지 → 귀하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당사에 납입 → 광고시행	TV, 라디오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광고
	상품광고	50%	50%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없음	
지역단위 광고	가맹점 매출증진	50%	50%	해당없음	지역단위 광고

개별광고	가맹점 매출증진	없음	100%	해당없음	단독광고
------	-------------	----	------	------	------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을 받아 진행합니다.
- ※ 전국단위의 광고 및 지역단위 광고를 할 경우, 위 표에 따른 가맹점부담 부분을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 총매출액에 따른 비율에 의하여 부담합니다. 단, 지역단위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에 한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단독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경우 광고 및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한 후 가맹본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귀하 및 귀하의 직원은 당사가 대여하는 운영매뉴얼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의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가맹계약서 제36조 손해의 배상)

- ① “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18 조(비밀유지 의무), 제 19 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갑”은 “갑” 또는 “갑”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 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 ③ “을”은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 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갑”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7.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로 귀하의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50일 정도가 예상되며, 그때까지의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VAT포함/99㎡(30평) 기준)

구분	내용	기간	비용
본사방문 또는 전화상담	창업 희망자분의 적성을 검사하고 치어스만의 특화된 시스템과 차별화 컨셉 이해	즉시	없음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	상권분석 전문가에 의한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 등기부, 토지이용계획원 확인 등을 검토하고 권리 및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요청시	점포 임대차 비용
가맹계약	법률에 의거한 가맹계약, 가맹계약서 설명과 지원 사항 설명, 상표 및 서비스권 사용을 설명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정보 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사업자 현황 제공 후 14일 경과일부터	가맹비: 11,000,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 교육비:3,300,000
인테리어 도면작성	인테리어 공사의 도면을 작성 후 가맹 계약자분과 같이 검토 & 수정합니다.	1일	없음
인테리어 공사	도면컨펌 후 치어스에 가장 적합한 컨셉으로 인테리어 공사 시작	25일	별도 공사 계약서 작성 - 계약금(40%) :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시 - 중도금(30%) :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 - 잔금(30%) : 오픈하기 전 7일 이내 ⇒인테리어공사, 가구공사, 소방공사, 간판 비용의 총액을 기준으로 분납함
각종 시설 및 집기류 입고	주방시설 & 홀 집기류 입고	2일	
본사 임원의 감리 감독	가맹계약부터 인테리어 공사 마감까지 본사의 임원 및 슈퍼바이저가 현장을 철저히 감독합니다.	-	
가맹점주님 교육	공사 기간 중 본사의 교육 시스템에 의한 실천 창업 교육 이수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병행)	8일	
식자재 및 공산품 입고	초도 물량, 각종 소모품, 홍보물,	2일	초도상품 5,500,000
최종 리허설 및 점검	각종 설비 점검 및 최종 리허설	1일	없음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개인 사정, 교육이수 정도, 가맹점포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나. 가맹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1)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 노력을 합니다.
- 2)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닐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관할법원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 및 점포소재지의 법원으로 합니다.

8. 가맹본부의 경영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가.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잡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p><분할지급 시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p>(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나.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특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판촉및 신규고객 창출, 소비자트랜드 고객 관리, 위생 관리, 조리 관리,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당사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판촉및 신규고객 창출, 소비자트랜드 고객 관리, 위생 관리, 조리 관리,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당사

라.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교육·훈련 종류	이수강제여부	최소시간	비 용	피교육자	불참시 불이익
개점 전 교육	강제	8일 (62시간)	300만원 (VAT별도)	가맹점주	오픈지연 계약해지
수시교육	강제 (신메뉴 개발 등 필요시 실시)	변동	로열티에 포함	가맹점주 종업원	상품공급중단 계약해지 갱신 거절
특별교육	자율	변동	실비	상동	-

※ 개점 전 교육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련 종류	이수강제여부	최소시간	비 용	피교육자	불참시 불이익
이론교육	강제	1일	600,000원	가맹점주	오픈지연
조리교육	강제	1일	600,000원	상동	상동
실무교육	강제	6일	1,800,000원	상동	상동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본점	성남시 분당구야탑동 533-3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21년1개월(7,712일)	-

다.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671.682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전화])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주방기기/기물>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주방그릇/집기>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초도 상품 및 필수공급 상품>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3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8.1.31>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주) 치어스(치어스)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129 -81 -66087)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총계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우 체 국 장			

(뒤 쪽)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 4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 합니다

가맹본부용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가맹계약서 제공확인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_____년 __월 __일 제공받았습니다.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주)치어스	영업표지	치어스
제공확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주소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가맹본부: (주)치어스 대표이사 정한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 합니다

가맹희망자용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가맹계약서 제공확인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_____년 __월 __일 제공받았습니다.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주)치어스	영업표지	치어스
제공확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No	상호	주소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가맹본부: (주)치어스 대표이사 정한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